

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규정 ②

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- 38호

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2. 3. 25.
산업자원부장관

제21조(기반조성사업의 선정·평가기준 등) ①

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선정·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의 검토·심의 및 조정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반조성사업이 공동사업이거나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사업인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22조(신청사업 선정안의 작성) 전담기관의 장은

신청사업의 검토·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안을 사업신청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선정안 작성시 사업 우선순위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23조(신청사업의 확정 등) ① 장관은 제22조의

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

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된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사업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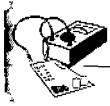
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 5 장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등

제24조(협약의 체결)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3

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사업별로 별도로



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의 1일부터 1년 또는 다년으로 하되,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주관기관의 장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⑤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장관과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⑥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5조(협약의 변경)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6조(사업의 수행)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장관은 제4조에 의한 기반조성사업 중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착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7조(협약의 해약) ① 장관은 이 규정 또는

제47조 규정에 의한 별도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·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귀책사유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협약의 해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6 장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

제28조(사업비의 산정기준 등)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기준은 사업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산출기준과 정부예산편성기준, 장관의 사업지침 및 국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29조(사업비의 지급 등) ① 장관은 제4조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금에서 출연, 용자 또는 출자지원할 수 있으며, 기금의 조성규모,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,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배정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전담기관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사업에 준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

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0조(사업비의 관리) 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대행한 사업인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기반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31조(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)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부서내의 감사 또는 공인 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내역서 및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비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사업비의 관리·사용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2조(사업비 잔액의 사용)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

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반납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기간중에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.

제33조(위탁사업비 등)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중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개발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사업비 총액의 10% 이상에 상당하는 위탁 개발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위탁 개발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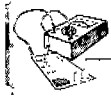
제 7 장 기반조성사업의 평가

제34조(사업결과의 보고)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첨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또는 당해사업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차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



업결과보고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실적보고서를 종합검토·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(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)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사업결과의 평가시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평가시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36조(사업결과의 평가)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종료후 평가결과, 성과분석 및 성공 사례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37조(발표회 개최)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내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및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8조(사업결과의 배포)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안 및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포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매년 최종사업결과 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 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, 산업계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.

③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는 사업결과보고서 등 사업정보의 보급·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결과의 배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한다.

제39조(사업결과의 용도관리)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와 지적재산권 등 사업결과의 용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관리 및 선정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제40조(사업협력팀구성·운영)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사업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사업협력팀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업협력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41조(위반사항의 제재) ①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동일 사업을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자
2.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자
3.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요령·지침 등에 위반한 자

② 제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8 장 보 칙

제42조(비밀유지 의무)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·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43조(국가기밀사업의 관리) 장관은 기반조성 사업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, 당해 사업의 선정·심사·평가 등에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.

제44조(포상) 장관은 관리운영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한 주관기관, 참여 기업,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5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부부처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별도의 전담기관(주관기관을 포함한다)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장관은 특정한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일부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6조(관리운영예산) ① 장관은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 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관은 기금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12월31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47조(별도규정 제정 등) ① 장관은 제4조에

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달리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4조제1항3호 기반조성홍보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8조(적용특례) 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<끝>